

# 2020년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5.(금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재화,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최승수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58건(안건번호 제2020-37921호~3967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7921호, 37922호는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티셔츠 제품 판매를 위해 타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무단 이용한 사안임. 해당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제품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85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6건(안건번호 제2020-2473호~249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0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1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6개 안건}은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성원영 전문위원: 금번 회의는 의결 안건이 세 개임.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이며, 제2호 안건은 저작권법 제133조  
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3호 안건은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임.

####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  
견을 구함.
- A 위원: 최승수 위원을 제4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최승수 위원을 제4분과위원  
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4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승수 위원을 선출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위너브라더스’, ‘윌트디즈니컴퍼니’, ‘유니버설픽처스’, ‘소니픽처스’, ‘학산문화사’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37921호~39676호로, 47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858건의 게시물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921호, 37922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것으로, 티셔츠를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인 민원인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인 '●●●' 사이트 판매자가 자신이 촬영한 티셔츠 제품의 사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7921호, 379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스크린으로 다시 보여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민원인이 제출한 티셔츠 사진의 '◆◆◆◆◆ ◆◆◆◆◆◆◆◆' 글자를 '♡♡♡♡♡♡♡♡ ♡♡♡♡♡♡♡♡♡♡' 글자로 수정·변경하여 판매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 ♡♡♡♡♡♡♡♡♡♡' 브랜드의 정품 티셔츠인 것처럼 판매 중임. 해당 브랜드는 현재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임. 안전번호 제2020-37921호와 제2020-37922호의 판매자 아이디는 다름.

(민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면서)민원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민원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모델 착용샷의 브랜드명을 변경한 뒤 자신의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임.

(민원 내용을 제시하면서)본건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두 기관에서 각자 처리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문제가 있음.

- A 위원: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분류 지정되

어 처리될지 몰랐던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게시물의 티셔츠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오래전 판결이긴 하지만 광고용 카탈로그의 햄 사진 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민원인이 제품 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물성과 별개로, 민원인이 본 건 티셔츠 사진의 권리자인지는 소명이 불충분함.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 건 티셔츠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인지, 직원이 촬영한 것인지, 프리랜서나 외주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받은 것인지, 사진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음.
- C 위원: 하급심 법원은 광고용 제품 사진을 도용한 사안에 대해 제품 홍보용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제품 홍보용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는 있음. 다만 모든 제품 홍보용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민원인이 본건 모델 착용샷을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모델의 신체 일부분만 촬영된 사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티셔츠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7921호, 3792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본 건 티셔츠 사진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기에

부족함.

- A 위원: 같은 생각임. 해당 사안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해 보임.
- C 위원: 해당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921호, 379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7923호~39676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7923호~39676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7923호~3967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모두 시정권고함이 타당함.
- A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923호~3967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921호, 제2020-37922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37923호~3967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9면부터 26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473호~2498호 중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

령 요건을 충족하는 10개의 안건은 가결하고,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1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6개 안건}은 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재화

위원 홍지만